

# 2017년도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제2차시험 형사소송법 문제

응시분야 :

응시번호 :

성명 :

**【문 1】** 친구 사이인 甲과 乙은 전화사기 범행을 공모한 후, 甲은 丙에게 전화하여 자신은 경찰관인데 丙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며 B의 계좌로 300만원이 이체되게 하였고, 乙은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. 이 사건을 조사하던 사법경찰관 A는 2016. 9. 6. 19:00경 우연히 乙을 발견하고 긴급체포하면서 乙이 소지하던 가방을 수색하여 C의 주민등록증을 압수하였고, 2016. 9. 7. 18:00경 위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사후 압수영장을 받았다. 이후 甲도 체포되었고, 甲과 乙은 A에게 사기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, C의 주민등록증은 길에서 주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. A는 이와 관련하여 甲과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.

- (1) 乙에 대한 수사 중 변호인이 접견신청을 하였는데 A는 乙이 중요한 진술 중이니 3시간 후 해주겠다고 거부하였다. 접견교통권 침해인지? 침해라면 변호인이 향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? (15점)
- (2) 乙은 함께 기소된 甲이 재판 전 자살하자, 공판정에서 A가 작성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다. 이에 검사 D는 乙의 자백사실을 입증하고자 甲에 대한 A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정에 제출하였다.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한가? (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하게 작성되었음) (25점)
- (3) 검사가 C의 주민등록증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했는데 변호인은 공판정에서 “C의 주민등록증은 전화사기와 관련이 없는 물건이므로 위법수집증거다”라고 주장한다. 이 주장이 타당한가?(10점)

**【문 2】** 구속전 피의자신문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. (25점)

**【문 3】** 즉결심판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. (25점)